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민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-73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2년 8월 26일

발 의 자: 김민석, 고찬양, 이종숙, 신찬호,
최세진

1. 제안이유

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제약이 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연구단체의
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정책역량 제고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
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
도록 하여 의원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명
확한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

나. 입법예고: 2022. 8. 31. ~ 9. 5.

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단서 중 “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”을 “전국동시지
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의 활동
기간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연구활동 보고서 제출)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 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. 다 만,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<u>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.</u>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10조(연구활동 보고서 제출) ① ----- -----. ----- <u>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들로</u> <u>구성된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</u> 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